

# 폐기물관리법해설

##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자료제공 : 환경처 폐기물관리국

### 1. 개정이유

이 법의 관리대상폐기물중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그에 관련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던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국민보건에의 유해정도를 기준으로 일부 변경하여 새로운 분류체계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아울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특정제품·용기에 대한 회수·처리비용예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1) 폐기물을 종전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과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의 일반폐기물과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중 국민보건에 유용하지 아니한 산업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국민보건에 유용한 산업폐기물은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일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폐기물은 국가가 책임관리를 하도록 한다(안 제2조 및 제4조).

(2)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물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9조, 제10조).

(3) 읍이상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청소지역을 지정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장·시장·군수가 일반폐기물처리책임을 지도하도록 하던 종전의 특별청소지역지정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폐기물처리책임을 지도하도록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일부지역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2조)

(4) 종전에는 쓰레기의 분리·보관의무만 부여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조치를 과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쓰레기를 포함한 일반폐기물의 배출자가 분리·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다(안 제15조 및 제62조).

(5) 환경처장관은 유해물질이 함유되거나 다량으로 제조·수입되는 일정한 제품·용기에 대하여는 당해 제품·용기가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폐기물관리금에 매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3조).

(6)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환경처장관이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하되, 환경처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4조 내지 제38조).

(7) 환경처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재산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자로 하여금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당해 시설이 소재한 토지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그 토지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등의 용도에 한정하도록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토지이용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기금에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다(안 제48조 및 제50조).

### 3. 폐기물 관리체계의 변경 및 신설

#### 가. 폐기물 분류체계의 개편 (법제2조)

○개정조항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다. 일반폐기물 광역관리

### 신 설 조 항

제5조(일반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개정취지와 이유

- 산업발달 및 인구의 도시화로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매립지 확보는 더욱 어려운 실정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매립지 확보난을 해소하여 도시지역의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함과 동시에, 광역처리에 따른 시설설치비 및 운영비 절감 등 위생매립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한편, 주민불편 및 다수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참 고

#### - 향후매립지 사용기간

구 분 계	'91종료	'92-'96	'97-2000	2000이후	
생활쓰레기	601	359	177	46	19
산업폐기물	46	26	8	6	6

※ 매립지 평균 사용기간 : 2년

- 광역일반폐기물매립장 건설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계	'90이전	'91	'92	'93	'94	'95이후
총사업비 (개소)	34	2	8	-	9	-	15
총사업비 (국고)	349,525 (56,721)	194,365 (2,516)	30,783 (7,700)	18,787 9,294	27,150 6,949	16,765 8,397	61,645 21,765

##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고시

### ○ 개정배경

-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2001년도까지를 목표로 하여 전국 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측하여 적정처리하고,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며

- 동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와 중간 및 최종 처리계획, 폐기물자원화 대책,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 동기본계획 결정 및 시설 등의 수용절차에 있어서

### 개 정 조 항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고시)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규모·면적·설치시기·사업시행자 등을 명시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결정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시·도공보에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는 - 환경처장관은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환경처장관은 동계획을 기초로 하여 국가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규모·시기 등을 결정하여 고시한 후 이해관계자로부터 열람토록 하고,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필요한 토지·건물 등을 수용하여 폐기물처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마. 폐기물관리구역 전국확대 실시

### ○ 개정취지

-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읍이상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직할시장, 시장·군수가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하여 폐기물을 관리하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전국을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오지지역은 물론 자연발생 유원지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문제가 해결된다.

- 특별청소지역지정제를 폐지한 이유는 농·어촌지역의 생활수준 향상 및 영농방식의 변화로 연탄재·폐비닐등 도시형쓰레기가 농·어촌에도 급격히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 농·어촌지역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13,800톤

### 개 정 조 항

제12조(일반폐기물관리구역) 전국을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제13조(일반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폐기물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다.

으로 이중 연탄재가 55.4%, 폐비닐 1.7%, 음식물류 39.1%, 유리·금속 등이 3.8%이며 현재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전국 1,251개 면중 837개 면으로 인구 8,104천명중 1,904천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

### 바. 폐기물처리업의 세분화

#### 개 정 조 항

제17조(일반폐기물처리업) ①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일반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일반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  
일반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폐기물을 소각·파쇄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
  3.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폐기물을 매립·해역배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일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폐기물처리업의 세분화 배경

-중전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까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폐기물을 처리단계별로 구분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으로 하고, 또한 특정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도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특정폐기물중간처리업, 특정폐기물최종처리업으로 세분화하여 폐기물처리체계를 전문화 하였다.

-이와같은 처리업을 단계별로 구분한 이유는 그간 폐기물처리업체의 전문성 결여와 장마부족 및 시설설치의 미흡 등으로 부실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처리업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처리체계의 효율성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는 과거의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는 취지에서 처리업을 세분화 하였다.

### 사. 폐기물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

#### 개 정 조 항

제29조(폐기물의 감량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량감소를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제품제조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의 발생량감소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등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1조(폐기물의 재활용 신고 등) ① 폐기물용 원료·재료·연료 등으로 재활용(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중 일반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특정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대상품목 및 방법 등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개 요

개정안 제6조에서는 국민에게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제3장(안 제29조 내지 안 제38조)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폐기물발생량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폐기물의 발생자체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이를 재활용 또는 자원화하여 폐기물처리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키고 폐기물매립지 부족권을 해결하기 위한 동조치는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한편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재활용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가 사용하는 물품중 일정비율을 재활용제품에서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필요성

-제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폐기물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제품·용기 등 제조방법을 개선하여 이를 억제하고,

-국가는 폐기물의 발생량 감소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폐기물 재활용시설설치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 하고, 공공기관에서 재생제품 우선구매 등을 위하여 기술개발 또는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한다.

아.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의 예치등

신 설 조 항

제33조(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의 예치 등) ① 환경처장관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용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용기가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제품·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기금에 매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폐기물을 회수·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예치하여야 할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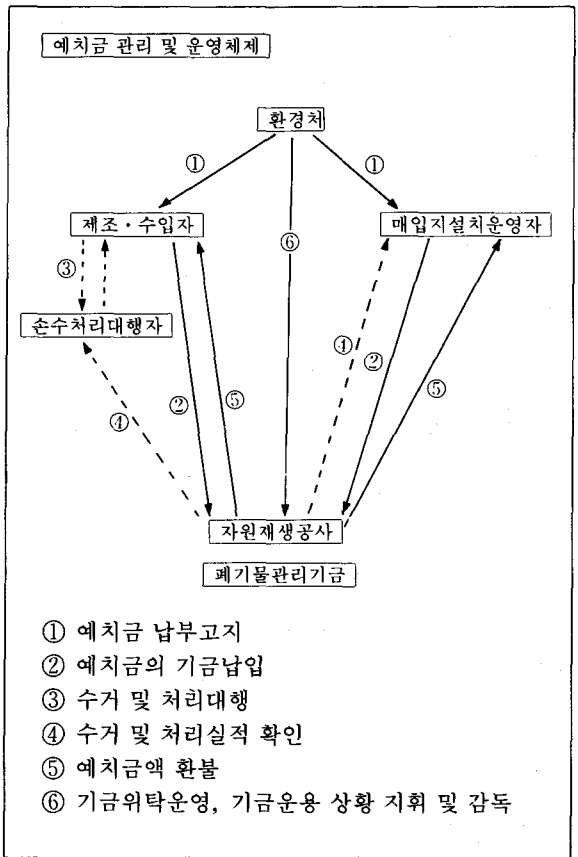
③ 환경처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용기의 회수·처리를 위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납부된 예치금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반환하되, 그 반환시기·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납부된 예치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은 폐기물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④ 환경처장관은 년도말에 예치금을 청산함에 있어서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가 실제 회수·처리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되, 그 납부시기·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또는 차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기물의 발생량 억제와 폐기물 회수의 효율화를 달성한 정도에 상응하여 상대적인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게 됨으로 자율적이고 근원적인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폐기물 회수의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강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게 됨.

-폐기물매립지의 확보 어려움을 극복하고 폐기물처리비 증가로 인한 기업부담을 경감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됨



○성격

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형태로서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을 국민경제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절감시키는 제도임

○필요성 및 효과

-폐기물발생량을 제품의 제조·유통단계에서 줄일 수 있도록 고려하고 기발생된 폐기물 회수 및 처리의 효율화를 제품 및 용기의 생산단계에서 배려하게 함.

-기존의 유통체계를 활용하여 폐기물을 회수하고, 폐

자. 폐기물관리기금 설치·운영

-기금설치의 필요성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한 재생 가능 폐기물의 효율적인 회수·처리체계의 정립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등의 감량화를 위해 기술개발 필요

○재생 가능 폐기물의 가격 및 양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폐기물의 비축체제 등 보관 용지의 확보

○폐기물 자원화 의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캠페인

### 신 설 조 항

제34조(폐기물관리기금)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치금
4.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사후관리를 위한 적립금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출연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폐기물의 구입 및 비축
2. 예치금의 환불
3. 매립지사후관리의 대행
4.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재활용기술의 개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제3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환경처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환경처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등 계몽활동 전개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방안

○재원확보

• 예치금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회수·처리비용

예치

• 적립금 : 시설설치자가 매립지 사후관리 비용 적립

• 기타 수익금 및 출연금

○기금용도

• 폐기물 회수 및 처리비

• 재활용시설 설치비

• 폐자원 비축 및 기술개발

○운영기관

• 환경처(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위탁 운영)

-기대효과

○폐기물 재활용으로 잠재적 부가가치 창출 기대

○감용량화를 통한 최종 매립지 수명연장 및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폐기물 자원화 촉진 등으로 해외 의존도 감소

### 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법제47조-50조)

-현황 및 문제점

○쓰레기 매립후 침출수, 악취, 가스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재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환경관리인. 1991. 9

### 신 설 요 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 또는 폐쇄한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처리 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사후관리업무를 적정하지 아니하게 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함.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된 예치비용, 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예치비용의 사전적립금으로 충당

○폐기물매립시설이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후, 침출수 누출 등으로 국민건강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립지에 대한 토지 이용을 제한 함.

민원이 야기됨.

○따라서 예상되는 환경상 및 공공위해의 발생예방 또는 제거를 위하여는 소요되는 비용을 기금에 적립함.

-신설이유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근거 및 소요비용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폐기물매립시설이 사용종료 하거나 폐쇄한 경우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사후관리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부적합하게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자로 하여금 대행케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비용에서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사용·종료되거나 폐쇄한 후 그 시설로부터 침출수 누출, 악취, 가스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지역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매립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함으로서 매립지로 인한 민원발생 요인 등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른 사후관리 대행자는 환경관리공단, 자치단체조합, 기타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임.

\* 관련조문

○제47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등

○제48조 : 사후관리 예치금

○제49조 : 예치금 사전적립

○제50조 : 매립지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 제한